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- 22호

## 군포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견행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3일

#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8월 2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  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| 찬성   | 반대 |    |    |
|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

# 군포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(이견행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1. 8. .

발 의 자 : 이견행, 장경민, 성복임,  
홍경호, 신금자, 이길호,  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## 1. 제안이유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기념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라.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## 3. 관련법령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

## 군포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3·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3·31독립만세운동”(이하 “만세운동”이라 한다)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군포시 관내에서 항거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념사업) 시장은 역사·문화적 가치가 있는 만세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만세운동 유적지에 기념시설물 설치
2. 만세운동의 추모사업
3. 만세운동의 재현사업
4. 만세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·연구 관련 사업
5. 만세운동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
6.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군포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